

『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전국 공설봉안시설 평균 사용요금보다 구미시공설송조당 사용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, 2018년 공설송조당 2관의 개관예정임에 따라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장사시설 사용료(안 별표 2)
 - 공설송조당 사용요금을 사용료로 일원화
 - 사용료 인상 : 관내 200천원, 관외 700천원
 - ※ 2008년 1월 사용요금 인상(관내 100 → 120, 관외 200 → 300)
 - 부부단실 신규 설치 : 관내 300천원, 관외 1,100천원

◆ 구미시공설송조당 사용료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관 내			관 외			비 고
		계	사용료	관리비	계	사용료	관리비	
일 반 실	현행	120	80	40	300	220	80	
	개정	200	200		700	700		
	증감	80	120	-40	400	480	-80	
부부단실		300	300		1,100	1,100		신설

※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(2017. 3. 28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큰 도

○ 본 『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2008년 이후 동결해 온 공설송조당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현황이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.
- 다만 사용료 인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료가 적정한 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